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. 11. 13 선고 2015가단21685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. 4. 23. 접수 제270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조인

별지